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 (차재홍의원 대표발의)

의 번 호	16-77
-------------	-------

발의년월일 : 2016. 8. 22.

발 의 자 : 차재홍, 김영미, 김윤정,
김효식, 문정애, 백남환
서종수, 송병길, 이필례,
전승학

1. 제안이유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데 있어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2012년 3월 16일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구의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안 제6조)
- 나.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고려사항(안 제8조)
-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의 반영(안 제10조)
- 라.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안 제12~제17조)
- 마. 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안 제18조)
-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안 제19조)

3. 관계법령

- 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 제10조 등
- 나.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제12조

4. 조례안 : 붙임

5.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붙임

6. 기타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입법예고 : 2016. 8. 22. ~ 8. 26.(제출된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수립·시행하는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별영향분석평가”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집행 과정에서 양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남녀차별 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분석평가”라 한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극적 조치) 구청장은 성평등 정책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함에 있어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분석평가를 촉진하기 위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분석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분석평가의 실시

제6조(분석평가 대상) ① 구청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분석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1. 구청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구청장이 해당 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3.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4.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5. 제11조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에서 분석평가 대상으로 요청한 정책 및 사업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례·규칙·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우
-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분석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분석평가의 실시) 구청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분석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 전
-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획: 해당 계획의 수립 전
-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세출예산안의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출 전
-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정책 및 사업: 해당 정책 및 사업 계획의 수립 전

제8조(분석평가의 고려사항)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평가를 하여야 한다.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2. 성별 수혜분석
3. 분석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방안
4. 그 밖에 분석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9조(분석평가서의 작성) 구청장은 분석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분석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10조(분석평가결과의 반영) 구청장은 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반영 등) ① 법 제10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한 소관 정책에 대하여, 구청장은 통보받은 분석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정책개선을 권고 받은 경우에 구청장은 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장 분석평가의 추진 및 지원 체계

제12조(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분석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분석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분석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 및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분석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예산담당 과장, 사업부서 과장 중 1명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성평등 및 성인지 정책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2. 그 밖에 분석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분석평가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서울특별시 마포구민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때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그 밖에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구청장은 분석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구본청 복지교육국장을 분석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조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분석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분석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제10조에 따른 분석평가결과의 정책, 성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반영에 관한 사항

5. 제19조에 따른 분석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분석평가 업무의 종합·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분석평가에 관한사항

제19조(분석평가 교육) 구청장은 분석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분석평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 2017년 소요예산(예상치) : 840,000원

- ▶ 산출기준

-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참석수당

- : 70,000원 * 4명(외부위원 기준) = 280,000원

- ※ 2016년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일당 100,000원을 지급하되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0,000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지자체 예산 상황 및 타 위원회와의 수당 지급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단가 70,000원으로 산정

- ▶ 연간 심의 계획 (2017년) : 연 2~3회 예정

- 소요예산 840,000원을 2017년 본예산 편성 예정

관 계 법령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 2015.8.4.] [법률 제13178호, 2015.2.3., 일부개정]

- 제5조(분석평가 대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을 말한다)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에 대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특정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행 중인 법령
2.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3.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를 실시할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를 실시하게 됨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보받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는 분석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의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정책 또는 사업에 반영하고 반영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분석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분석평가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분석평가의 실시 및 분석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분석평가결과의 정책,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반영에 관한 사항
4. 제11조제2항에 따른 개선 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5. 제15조에 따른 분석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6. 분석평가 업무의 종합·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 기관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시행 2015.8.4.] [대통령령 제26469호, 2015.8.3., 일부개정]

제12조(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소속 실장·국장(실·국을 두지 아니하는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과장·담당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말한다) 중에서 분석평가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